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5호 소개

### □ 최신 세계헌법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예배금지를 규정한 법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은 종교집단의 회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독일 헤센주 법규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판단한 사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본안에서 승소한다면 결과적으로 신앙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지만,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위 규정이 잠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부활절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종교회합을 위해 모일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나 의료기관 과부하 등의 우려가 크다고 하면서, 위 두 결과를 비교형량할 때 적어도 전염병 초기 단계에서는 가급적 사람들간 접촉을 막음으로써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문제된 법규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감염예방조치를 마련한 집회의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일부인용결정>은 기센(Gießen)시가 내린 집회금지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관하여 판단한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일정 간격 유지 및 휴대폰과 확성기를 이용한 원격 발언 등의 감염예방조치를 마련하여 집회를 신고하였고 그 밖의 다른 감염예방조치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은 집회금지처분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센시가 집회 허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기본법 제8조의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과 효력 범위를 고려하면서도, 감염병 예방의 차원에서 신고된 집회의 위험성에 관한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집회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집회금지처분을 하였으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하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

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침묵시위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신청에 있어서도 보충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신청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아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부가하여 가처분신청이 이유 있는지 여부도 판단하였는데, 신청인이 이전에 개최하였던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았고 일정 간격을 준수하지 않았던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집회금지처분이 명백히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처분 신청이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테러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이후의 보안처분의 위헌 여부> 사건은 테러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형 집행 종료 이후 높은 재범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안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보안처분의 내용인 의무 및 금지사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중복적이며 보안처분의 기간이 갱신될 경우 과도하게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공공질서 유지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비례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선별적 세제혜택의 위헌 여부> 사건은, 낮은 세율 적용이라는 조세우대조치를 규정한 세법 조항에 대하여 해당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자가 평등원칙 위반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주택공급량을 늘리기 위하여 상업용 부지의 주거용 부지 전환을 장려하는 유도적 조세정책을 시행하였고, 그 일환으로 상업용 부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 법인세 적용을 받으면 ‘양도인’에 낮은 세율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입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세우대조치에 관한 입법에 있어서도 입법목적과

수단 사이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기준인 ‘양수인이 법인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상업용 부지를 주택용 부지로 전환할 능력’ 및 ‘주택건설 장려’라는 입법목적과 합리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세계헌법재판기관 소개

콩고민주공화국 헌법재판소를 소개하였습니다.

#### □ 언론 속의 세계헌법재판 및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

2020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언론 기사 속에 비친 세계헌법재판에 관한 소식을 모아 놓았습니다.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에서는 최신 학회지에 실린 세계헌법재판관련 논문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 □ 국외통신원 소식

미국 통신원 소식으로 소개된 <종립학교에 대한 주정부 장학금 지원 혜택에 대한 헌법적 논의- 미국 연방대법원 Espinoza v. Montana Department of Revenue 판결>은 종교단체가 설립·운영하는 학교(‘종립학교’)와 다른 사립학교를 차별취급한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몬타나 주 헌법에서는 주정부 보조금이 종립학교에 쓰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주정부는 종립학교를 장학 프로그램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몬타나 주 정부 규칙의 위헌성에 대하여 연방대법원 다수의견은 연방헌법 우위의 원칙을 강조하며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연방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 조항 위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위 몬타나 주 규칙은 오로지 종교적 성격을 이유로 특정 사립학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공익 달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연방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국 통신원 소식으로 소개된 <중국 헌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중일공동성명과 중국인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 검토>는 일본정부에 대한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국 학계의 논의들을 소개한 글입니다. 일본은 1972년 체결된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일본국정부의 공동성명’ 제5조 등을 근거로 중국인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중국 학계에서는 헌법상 국무원(행정부)의 권한 범위와 인민의 대표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지위 등을 근거로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